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34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15.

발 의 자 : 이만희 · 권영진 · 서천호
김기웅 · 엄태영 · 이성권
이종배 · 유용원 · 김석기
김기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다양한 산림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으면서, 산림복원사업에 한하여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(시행령 별표1 제4호) 등이 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, 그 시공자의 교육·훈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산림복원기술자 및 산림복원전문업 제도가 도입되어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이 산림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산림복원사업의 시공자 및 시공자의 교육·훈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산림복원 분야 전문인력의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의7제4항 및 제42조의10제3항 삭제).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7제4항을 삭제한다.

제42조의10제3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산림복원사업의 시공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림복원사업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 공고(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말한다)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2조의7(산림복원사업의 계획 · 시행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산림복원사업의 시공은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산림사업법인 중 산림토목 분야의 산림사업법인(시행령 별표1 제4호)과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42조의10(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<u>제42조의7제4항에 따라 산림복원사업을 시공하려는 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「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 · 훈련을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42조의7(산림복원사업의 계획 · 시행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2조의10(산림복원 전문 인력의 양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